

제 702 호  
1982.11.23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이 상 배  
편집인 : 공 보 관 이 상 진  
전화 : 791-8111~3  
인쇄 : 한옥빌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  
전화 : 279-8111~3

# 시 보

차 례

● 규 칙

제 2510 호	서울특별시사무본청규칙등개정규칙	2
제 2511 호	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개정규칙	2
제 2512 호	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칙제규칙등개정규칙	3

공																			
발																			

이 시 공무원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.  
이 시보는 공민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# 서울특별시

"남쪽은 활기로 남쪽은 세계로"

2423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을 이  
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 
1992. 11. 23

㉔서울특별시규칙제 2510 호
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증개정규칙  
서울특별시사무분장규칙 중 다음과 같이  
개정합니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2조의2 및  
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(공보관) 공보관을 보좌하게 하기 위  
하여 공보1담당관 및 공보2담당관을 두  
며,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제2조의2(공보1담당관) ①공보1담당관 밑  
에 공보행정계 및 홍보기획계를 두며, 공  
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홍보  
기획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  
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②공보1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 
각호와 같다.

1. 공보행정계
  - 가. 공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
  - 나. 정기간행물 등록 및 관리
  - 다.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(공보분야)
  - 라. 시정여론조사 및 시정반영
  - 마. 시보발간
  - 바. 서울시민신문 발행
  - 사. 시정홍보위원 운영
  - 아. 시정소식유송망(DM) 운영
  - 자. 이동전시홍보에 관한 사항
  - 차. 국정홍보관 관리
  - 카. 관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계의 주  
관내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홍보기획계
  - 가. 시정에 관한 기획홍보 및 보도
  - 나. 광고물에 의한 시정 홍보
  - 다. 홍보물 제작 및 조정 통제
  - 라. 유선방송 허가 및 지도
  - 마. 홍보영화 제작에 관한 사항

제2조의3(공보2담당관) ①공보2담당관 밑  
에 보도1계 및 보도2계를 두며, 각 계장  
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공보2담당관의 제별 분장사무는 다음  
각호와 같다.

1. 보도1계
  - 가. 보도자료 조정 및 제공 관리총괄
  - 나. 보도 필요 사항 지정수합
  - 다. 인쇄매체 보도지원
  - 라. 보도내용 분석 반영
  - 마. 청내 정기간행물 구독 배포에 관한  
사항
  - 바. 신문광고 등에 관한 사항
  - 사. 경사진실 운영
  - 아. 기사실 운영
  - 자. 관내 다른 계의 주관에 속하지 아  
니하는 사항
2. 보도2계
  - 가. 전파매체 보도자료 제공 관리
  - 나. 전파매체 보도지원
  - 다. 방송모니터실 운영
  - 라. 전파매체 보도내용 분석 반영
  - 마. 동사진실 운영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증개정규칙  
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 
1992. 11. 23

㉔서울특별시규칙제 2511 호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 
개정규칙

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(별표 1) 본청지방공무원정원표 총계정  
원란 "1,870"을 "1,876"으로 하고, 4급정원  
란 "17"을 "18"로 하며, 정원내용란 중 행  
정직 "5"를 "7"로 하고 "행정 또는 4급

상당 별정직 1"을 삭제한다.  
 5급정원란 "242"를 "243"으로 하고, 정원  
 내용란 중 행정 또는 별정직(5급상당) "8"  
 을 "9"로 한다.

6급정원란 "449"로 "450"으로 하고, 정원  
 내용란 중 행정직 "304"를 "305"로 한다.

7급정원란 "547"을 "549"로 하고, 정원내  
 용란 중 행정직 "389"를 "391"로 한다.

기능직 정원란 "472"를 "473"으로 하고  
 정원내용란 중 10등급 "312"를 "313"으로  
 하며, 사무보조원 "88"을 "89"로(타자 "66"  
 을 "67"로)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증게정규칙을  
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이상배 ㉔  
 1992. 11. 23

●서울특별시규칙제 2512 호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  
 개정규칙

서울특별시농촌지도소직제 중 다음과 같  
 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농촌지도소직제"를 "농촌지도소  
 직제규칙"으로 한다.

제1조 중 "지방농촌진흥기구설치에관한규  
 정 제3조제4항의"를 "서울특별시와그소  
 속기관직제 제30조의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